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시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5. 22.

사회건설위원회

1. 審 査 經 過

- 가. 발의일자 : 2008년 5월 14일
- 나. 발 의 자 : 신홍식 의원 외 6인
- 다. 회부일자 : 2008년 5월 19일
- 라. 상정일자 : 제13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8년 5월 20일)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 설명자 : 신홍식 의원)

가. 제 정 이 유

- □도로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시장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 요 내 용

- 조례의 적용대상은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기간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1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임(안 제3조)
-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 수립·제출하여야 함(안 제4조)
- 구청장은 당해 공사의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
- 공사시행자가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구청장의 자문기구인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소규모 공사는 약식절차로 위원회의 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구청장은 변경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공사시행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고발조치할 수 있음(안 제10조 내지 안 제11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이남식)

-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개정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을 근거로 하여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교통소통대책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1조 목적은 도로점용 공사시 발생하는 교통소통 등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2조 정의는 도로·도로점용공사·교통소통대책에 대한 법률적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 안 제3조 적용대상은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여 공사하는 “구도” 와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의 “특별시·도” 를 대상으로 하는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전력 및 통신공사 등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통소통대책 수립 시 공사기간·시간대, 공사방법, 교통통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 안 제6조 교통소통대책의 변경은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등의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며,
- 안 제8조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여부 확인은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9조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자문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임명권,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 안 제10조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등의 내용을 이행치 않을 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 안 제1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로 시정명령 불이행 시 도로법을 적용 고발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 안 제13조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 부칙에서는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기간이 20일이하인 “특별시도”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을 관리하여 대상공사 시행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시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46
----------	-----

발의년월일 : 2008년 5월 14일

발 의 자 : 신흥식 의원

1. 제정이유

- 도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시장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대상은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기간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1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임(안제3조)
-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 수립.제출하여야 함(안제4조)
- 구청장은 당해 공사의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안제5조)
- 공사시행자가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제7조)
- 구청장의 자문기구인 도로점용공시장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소규모공사는 약식절차로 위원회의 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안제9조)
- 구청장은 변경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공사시행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고발조치할 수 있음(안제10조 내지 안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나. 예산조치 : 2008년 추경 예산 확보(심의위원 수당)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의 특별시도와 같은 법 제15조의 구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교통소통대책을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내용과 그 내용에 따라 수정된 교통소통대책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영향평가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 ①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제2항 제2호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절차로 위원회의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당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99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홍보)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및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정보를 대중매체나 각종 안내포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홍보하여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 중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